

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5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4. 7. .

발 의 자 : 오진택의원외 3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'94. 3. 16, 법률제4741호)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('94. 7. 6, 대통령령제14317호)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과 규정을 정하는등 현행 청원심사규칙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청원의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의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접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전 협의규정을 둠(안 제5조)
- 나.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의장이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을 둠. (안 제6조)
- 다.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이나 청원인의 진술은 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청원 심사를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규정을 둠.
(안 제7조, 안 제8조)

속초시의회규칙 제 호

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

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 조 2항중 “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 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”를 “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 6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 원에게 인쇄,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, 회부한다.

제 7 조, 제 8 조 제1항, 제 13 조 제1호중 “본회의 또는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이의신청) ① (생략)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/u>	제5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견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,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, 배부하여야 한다.	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,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, 회부한다.
②, ③, ④ (생략)	②, ③,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소개위원의 취지설명)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<u>본회의 또는 위원회의</u> 요구가 있을 경우 <u>본회의 또는 위원회에</u>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	제7조(소개위원의 취지설명)위원회.....위원회.....
제8조(청원인등 진술) ① <u>본회의 또는 위원회는</u>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.	제8조(청원인 등 진술) ① <u>위원회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 (청원인에 대한 통지) 1. 청원접수 및 <u>본회의 또는 위원회에</u> 의 회부 2 ~ 5 (생략)	제13조 (청원인에 대한 통지) 1. <u>위원회</u> 2 ~ 5 (현행과 같음)